북항 월드메르디앙 그랑블루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본 분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분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은「주택법」제57조 제2항 제1호, 동법 제57조 등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7.18.입니다. (청약자격의 기간, 나이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함)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당사 대표번호 (051-468-2502)에서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46A, 46AA, 46B TYPE 총94세대에 해당하오니 홍보관 및 홈페이지(www.북항월드메르디앙.com)를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2025년 06월 30일 개정 및 시행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2조제1항 및 제59조에 의한 규정만을 적용받으므로, 입주자저축요건, 주택청약자격,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요건, 재당첨 제한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본 공동주택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7.18)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국내거주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와 법인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타입별 1인당 1건 청약 가능하며, 타입별 동일인이 2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공동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체결 시점에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연대하여 균등(각각 5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 계약자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하며,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부적격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더라도 수분양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환불 대상이 아니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등기와 무관하게 중간 분양권 전매(최초 분양계약자와 소유권 이전등기 시 최종 매수자까지)도「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단,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의 1/2을(연대 균등 각각 50% 납부) 부담하여,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초과~3천만원이하	3천만원초과~5천만원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이하	1억원 초과~10억원이하	10억원 초과
세액(균등 납부)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본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시 동구 건축과 - 31595호(2025. 7. 17 .)**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본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건축물임. (허가번호 : 2020-건축과-신축허가-12)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648-13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지하 2층, 지상 27층 2개동 공동주택 총 162세대 중 도시형생활주택 일반분양 94세대**

· 건축물 연면적 : 전체 19,592.5598㎡ 중 도시형생활주택 7,388.8073㎡.

· 본 건축물은 공동주택(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복합 계획됨

· 건축물 층별 용도

구분	용도
지하 1층 ~ 2층	기계/전기실, 주차장
지상 1층 ~3층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관리사무소), 공용(엘리베이터/계단실/복도),주차장
지상 4층 ~27층	공동주택, 오피스텔, 공용(엘리베이터/계단실/복도),주차장

■ **입주시기** : **2025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및 공급규모**

구분	타입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대지지분	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도시형 생활주택	46A	46.0569	23.3892	69.4461	7.9638	77.4099	6.7608	24
	46AA	46.9470	23.7349	70.6819	8.1177	78.7996	6.8915	23
	46B	46.8018	24.2244	71.0262	8.0925	79.1187	6.8702	47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하여 면적 합산 과정에서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주택규모 표기방법은 법정계량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홍보관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대지지분은 세대별 공급면적 비율에 의거 균등 배분하였으며, 세대별 전용면적, 공용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와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 등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타입	동·라인	층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대지비	건축비	소계	계약시	입주지정일
46A	101동 4호	4~5층	2	93,390,000	189,610,000	283,000,000	28,300,000	254,700,000
		6~9층	4	96,855,000	196,645,000	293,500,000	29,350,000	264,150,000
		10~14층	5	99,627,000	202,273,000	301,900,000	30,190,000	271,710,000
		15~20층	6	102,399,000	207,901,000	310,300,000	31,030,000	279,270,000
		21~27층	7	105,171,000	213,529,000	318,700,000	31,870,000	286,830,000
46AA	102동 2호	4~5층	2	96,162,000	195,238,000	291,400,000	29,140,000	262,260,000
		6~9층	4	99,957,000	202,943,000	302,900,000	30,290,000	272,610,000
		10~14층	5	102,729,000	208,571,000	311,300,000	31,130,000	280,170,000
		15~20층	6	105,501,000	214,199,000	319,700,000	31,970,000	287,730,000
		21~26층	6	108,273,000	219,827,000	328,100,000	32,810,000	295,290,000
46B	101동 3호	4~5층	2	98,340,000	199,660,000	298,000,000	29,800,000	268,200,000
		6~9층	4	102,234,000	207,566,000	309,800,000	30,980,000	278,820,000
		10~14층	5	105,072,000	213,328,000	318,400,000	31,840,000	286,560,000
		15~20층	6	107,910,000	219,090,000	327,000,000	32,700,000	294,300,000
		21~27층	7	110,748,000	224,852,000	335,600,000	33,560,000	302,040,000
	102동 1호	4~5층	2	104,709,000	212,591,000	317,300,000	31,730,000	285,570,000
		6~9층	4	105,666,000	214,534,000	320,200,000	32,020,000	288,180,000
		10~14층	5	107,085,000	217,415,000	324,500,000	32,450,000	292,050,000
		15~20층	6	108,966,000	221,234,000	330,200,000	33,020,000	297,180,000
		21~26층	6	111,078,000	225,522,000	336,600,000	33,660,000	302,940,000

■ **공통사항**

- 주택형 표기방는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상기 분양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동의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용면적은 주택법에 따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상기 분양금액에는 각 타입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 발코니 확장은 외관의 통일성 및 기능성을 고려하여 전세대 일괄적으로 확장시공하여 공급하므로 계약자는 개별적으로 발코니 미확장을 선택할 수 없으니 청약 및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사업주체에 대하여 미확장 선택 또는 발코니 미확장에 따른 공사비 상당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분양금액은 층, 향등 여건을 고려하여 적용하였으니 분양홍보관 및 세대를 직접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라며, 분양금액을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층별, 호별 분양면적 및 타입이 상이하며, 층별 호수기재가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분양홍보관 및 세대를 직접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및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진입통로, 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소방의 피난 등에 필요한 전체층의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홀, 계단실등)은 근린생활시설 등과 함께 전체 공용으로 사용됩니다.
- 본 건축물은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이 복합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건축물로 시설별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적의 조정하여 시설별 대지지분을 분할하였고, 도시형생활주택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적의 조정하여 배분하였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면적 및 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 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지정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분양금액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하며,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청약자격, 재당첨제한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입니다.

2 청약신청 및 유의사항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7.18)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인 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에 한합니다.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1인당 신청가능 건수 : 1인당 타입별 1건씩 청약신청 가능합니다.(동일인이 동일 타입에 2개 이상 또는 총 2건 이상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청약신청과 당첨 전부를 무효 처리함)
• 청약신청은 홍보관에서 현장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청약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 및 호,수는 청약 신청자에 한해 직접추첨방식을 통해 타입별로 결정됩니다.
• 사업주체는 당첨자 계약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 본 건축물의 층수, 향 등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조망권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자는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및 오인으로 발생 되는 부분에 대하여 사업주체인 시행위탁사, 시행수탁사, 시공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일시	내용
청약일정	2025년 07월 27일(일) 10:00~17:30	홍보관 현장접수 : 부산광역시 동구 홍곡로 22, 1층
당첨자 발표 및 동·호 추첨 일정	2025년 07월 30일(수) 10:00~16:00	홍보관 현장진행 : 부산광역시 동구 홍곡로 22, 1층
계약일	2025년 07월 31일(목) ~ 8월 2일(토) 10:00~16:00	홍보관 계약진행 : 부산광역시 동구 홍곡로 22, 1층
장 소	- 당첨자 및 호,수 확인은 당사 홍보관 또는 홈페이지(www.북항월드메르디앙.com)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대화 착오 가능성으로 인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호,수 발표는 청약신청 접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마감시간 내에 당사 홍보관에서 청약신청이 완료된 신청 건에 한해서만 인정되므로 마감시간 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방식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계좌

구분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전타입	1,000,000원 (금 일백만원)	하나은행 918-910009-20904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 반드시 청약신청금 납부후 신분증 및 입금확인가능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지참하여, 홍보관에 비치된 서식류 작성 접수자에 한해 청약신청이 완료됩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별도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7.18)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주체가 임의 분양합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방법 : 당사 홍보관에서 청약 신청자에 한해 직접추첨방식으로 당첨자 및 타입별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북항 월드메르디앙 홍보관 또는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 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및 동,호 발표	당첨자 발표 장소
2025년 07월 30일(수) 16시 이후	북항 월드메르디앙 홈페이지(www.북항월드메르디앙.com) 또는 당사 홍보관(부산광역시 동구 홍곡로 22, 1층)

■ 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당첨자 선정 방법	• 청약신청금을 납부하고, 당사 홍보관에서 청약 접수를 완료한 인원중 당첨자로 선정합니다. ※ 경쟁 미발생시 : 당첨자로써 결격사유가 없을시 당첨자로 선정 / 경쟁 발생시 :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
동·호수 결정 방법	• 당첨자 대상으로 직접추첨방식에 의해 청약 신청한 타입 내에서 동·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합니다.
기타사항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시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분	환불 세부내용
환불대상	• 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한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환불방법	• 청약자가 신청당시 기입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계좌로 환불

※ 청약시 환불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 계좌 명의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일시 및 장소

- 계약일시 : 2025년 07월 31일(목) ~ 2025년 08월 2일(토) 10:00~16:00
- 계약장소 : 북항 월드메르디앙 홍보관(주소 : 부산시 동구 홍곡로 22, 1층)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서 미작성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없이 사업주체가 임의 분양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봅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제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당첨 동 · 호수의 공금금액을 확인한 후 지정된 공급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체결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경우 계약 체결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하나은행	918-910009-20904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 현재 분양대상 목적물은 ㈜코람코자산신탁으로 관리신탁되어 있으나, 추후 담보신탁으로 전환되어 시행수탁자, 금융기관, 분양대금 납부계좌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 체결을 해야하며 변경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개별 통보 할 예정이오니 계약 관련 변경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로, 납부하는 분양대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합니다.
- 지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분양(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입금 시 계약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ex) 104동 302호를 계약한 홍길동 → 104302홍길동
-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동·호수를 필히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되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공급금액은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시구비서류**

구분	확인 및 유의사항
본인 계약시(공통)	①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② 계약자 인감도장 또는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③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④ 계약자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본인발급용) ⑤ 주민등록표등본 1통
법인	①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② 법인 인감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 등기부등본 1통 ⑤ 법인 대표이사 본인 계약 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직원 및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외국 법인일 경우 : 관련 법률상 토지취득허가서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추가 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계약시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① 계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②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계약 위임용](본인발급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③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1통(당사 홍보관 비치) ④ 대리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및 도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7.18)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조건 및 유의사항**

- 사업주체는 대출을 알선하지 않습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주민등록증 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으로 당첨 및 계약체결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계약 체결 후 부득이 해약하는 경우 공급계약서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사업부지 인근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근린생활시설 배치구조 및 층,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사업부지, 평면도, 배치도, 홍보관 내 설치된 모형 등을 통해 현황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사기간 내 본 건축물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임의의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에 관해서는 사업주체에게 위임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한 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동주택 입주시기와 타 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입주시기는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당사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을 따릅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신탁사,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행정구역 및 동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외국인 포함)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함. 따라서,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 제3조 1항 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공급계약 (전매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3조와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 (공급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의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함. 부동산등기(최초 공급계약서와 최종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 법에 따른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본 아파트는 사용검사 완료된 아파트이므로 사전방문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기시공된 마감재, 가전 및 가구류 등 세대 내부품목을 포함한 모든 여건을 파악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월 : 2025년 08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입주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4 기본제공 및 추가 선택품목

■ 기본제공 품목

구분		비고	46A	46AA	46B
공통	1WAY 시스템에어컨	LG전자 에어컨	O	O	O
공통	홈네트워크 월패드	COMMAX	O	O	O
공통	욕실폰	COMMAX	O	O	O
공통	디지털 도어록	COMMAX	O	O	O
현관	신발장	시스템 신발장 및 선반	O	O	O
거실	벽체	포슬레인타일	O	O	O
주방/식당	주방상판	LX하우시스 인조대리석	O	O	O
주방/식당	씽크	대림통상 씽크	O	O	O
주방/식당	씽크	선반	O	O	O
주방/식당	조리대	3구 인덕션	O	O	O
주방/식당	조리대	렌지후드	O	O	O
욕실	공용욕실	대림통상(양변기, 세면기, 수전)	O	O	O
욕실	공용욕실	비데	O	O	O
욕실	공용욕실	샤워부스	O	O	O
안방	드레스룸	도어 및 시스템 선반	O	O	O

5 유의 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계약 전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 분		내 용
공 통	일반사항 인허가	■ 본 사업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 및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37조,제38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 됩니다. ■ 입주 후 원활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AS사무실을 주차장,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동PIT일부 등 공용부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벽체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경관 조명, 영구배수시스템 유지(설치시),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소음,진동 등) 및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각종 광고 홍보물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표현 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시행규칙」제13조제5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관련한 사항을 양지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 건축물과을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정리 완료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옥외경관조명, 조경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관리비 부과기준 등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됩니다. ■ 외부 시설물 가로등, 가로수 등은 공동주택과 비주거시설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며 공동으로 관리비를 정산합니다. ■ 본 주택의 최초 관리업체(관리사무소, 입주관리업체 등)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선정하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일정기간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및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각종 홍보물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우선합니다. ■ 개인 부주의로 인한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동표기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법 제9조의2 및 시행령 제5조,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마감시간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본 주택은 세대 간 벽체를 공유하는 건축물의 특성상 일부 세대에서 측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구역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홍보관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벌, 동호별 등의 공급금액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실수 없습니다.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계약면적 외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에 의한 변경, 인허가 과정 및 실시공 시, 외관 또는 성능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동출입구, 발코니 아파트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형태 및 높이,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공용홀, 복도, 근린생활시설, 조경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시공시 대지면적, 연면적, 조경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의 계약시점에 따라 분양조건(분양가격, 옵션제공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소급적용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분양사업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도로 및 기반시설	■ 단지 외 남서측, 북서측면으로 왕복 2차로 도로가 위치하며, 보행자도로에 면하는 세대는 차량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소방차 전용구역) 및 단지 내 보행로, 근린생활시설 등에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간접, 소음, 분진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 및 인접대지와 높낮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기부채납 도로 등 기반시설은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라 계획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선 외부의 도로 및 옹벽 등의 구조물은 실시계획단계로 관련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초량천, 초량3구역 재개발 구역 등이 위치하며, 이로 인하며 소음, 진동, 비산먼지, 악취, 해충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본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단지 인근에 공동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로, 버스정류소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간섭,소음등) 및 유해시설 등은 주택의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청약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 홍보관 및 사업 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전기 및 가스 공급과 관련,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의 전기 및 가스 공급을 위하여 공동주택부지 내 지상 한전개폐기 또는 가스정입기 설치 및 부지 무상 제공을 하게 될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학교	■ 본 지역의 학생배치계획은 개발계획의 변경, 학생수용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동 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 등 해당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배치에 관한 내용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계획 추진 일정(시기 조정 등) 및 학생 배치여건 변화(관내 공동주택 개발, 학생 수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설계일반	■ 홍보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천연자재(석재, 무늬목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홍보관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베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천연석으로 시공 되어 있는 경우 본 시공시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자연적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특기시방서에 별도의 시공기준이 없는 경우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시공계획서 또는 승인자재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릅니다.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인증표시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공인기관 승인된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밥굽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성능시험을 통하여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품질 또는 성능을 확인 후 현장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의 경우, 입주 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성능저하에 대해서는 수분양자(입주자)가 유지 및 보수 관리하여야 합니다. ■ 수분양자가 임의로 전유세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여 하자 또는 성능불량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구역경계	■ 각종 홍보물 및 배치도의 대지경계선은 최종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공부상 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또는 실측정리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입주 잔금 납입시 상호 정산합니다. 다만, 분양면적 및 공유지분 면적 증감이 2%미만일 때는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인접대지의 담장 등 구조물의 일부가 본 사업부지내로 축조된 상황일수 있습니다.
	분양홍보물 및 홍보관	■ 각종 홍보·인쇄물(카다로그 등)에 표시된 컴퓨터그래픽 및 마감재(규격,재질,디자인,색상 등), 홍보관 내 전시모형(건축물,조경,시설물,단위세대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인허가권자 등의 각종 평가 또는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홍보관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다로그 및 각종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음. ■ 홍보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지하주차장,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변경) 도서에 준함. ■ 홍보관에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수납공간, 실면적, 발코니 형태 및 크기 등 홍보관에 전시된 주택형과 다른 사항(마감자재 , 제공품목 및 가구 디자인 등)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 홍보관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의 품귀, 품절, 제조회사의 도산,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시공여건 개선 또는 신제품의 개발 시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홍보관 건립시 미관 및 성능향상 등을 위해 건축허가도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된 사항은 추후 홍보관 기준으로 건축허가변경(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신고)처리 할 예정임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함. ■ 각종 홍보물은 2023년 06월 건축 변경 허가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분양홍보물 및 홍보관에 표시된 단지모형, 단위세대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종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 포함) 도면을 기준으로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에 단위세대 모형 또는 카탈로그를 참고하시어 실제 입주하실 세대의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을 숙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관에 설치된 모든 CG, 모형,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홍보관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시공·설치되지 않습니다. ■ 반드시 계약 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단 지	**단지계획**	■ 단지 모형의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주민운동시설, D/A,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수경시설, 포장,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 또는 삭제, 추가될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모형상에 생략되어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음. ■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 등,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조경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부 침하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그래픽은 해당관청과 협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시 분양단지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 ■ 공개공지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써 입주자 임의로 휀스를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유지 및 관리에 발생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단지내 옹벽구조물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시공구조상 보강시설물에 따른 점용비용이 발생될 수 있음. ■ 주민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경비실(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주변단지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차량전조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소음 및 세대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 1층 필로티 혹은 단지내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 사용할 수 있음. ■ 세대 욕실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옥상에 무동력 흡출기(무전원 고정식 흡출기)이 설치되며, 최상층 세대의 경우 무동력 흡출기와 근접해 있어 악취,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1층(저층) 전·후면에 소방법상 공기안전매트 설치 등 소방 활동 공간 필요에 따른 식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프라이버시 확보가 미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단지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소규모 휴식 공간인 공개공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개공지는 24시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개지는 누구에게나 개방되는 공간으로서 입주자 임의로 울타리, 가림막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의 유지관리에 발생되는 비용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일부 저층구간은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등의 부분에서 취약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주차장법 등)에서 정하는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발주처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등의 이미지 및 투시도에 표시된 단지 내·외부 디자인은(색채, 입면, 마감재, 조경, 측벽 그래픽, 사인, 기단부, 기타 외부사항 등)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공사 시 월드메르디앙의 디자인 기준에 따라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될 수 없습니다. ■ 건축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분양 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건축물의 외관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레벨은 건물입구 및 인접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 또는 조경계획 등에 따라 일부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도로와 단지 내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에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 될 수 있으며 , 그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과 인접한 동 출입구 및 외곽 주변의 DA, 실외기실, 배기탑, 제연휀룸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위치가 결정된 바, 이용 상의 불편 및 인접세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위치를 확인하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검토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동간 거리에 있어 각 동 인접 동과의 시각적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한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홍보관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기계, 전기실, 급.배기구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및 재활용품 보관소는 지상1층에 배치되며, 이로 인한 시선간섭,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으므로 홍보관에 방문하시어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삿짐 운반시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을 사용해야 하며,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임의사용에 의한 파손의 복구비용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따름) ■ 단지 지상1층에는 제연용 송풍기가 설치되어 소방시설 점검시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계약물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 등의 변경,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주변 및 공용 시시설물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인을 위한 설치 시설물의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및 난간의 형태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난간 턱 높이조정, 창호형태 및 재질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부위에 레벨 차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울타리) 등은 일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 배관에는 동파방지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홈네트워크 설비는 홍보관 사양에 따라 시스템 장비 구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옥외 보안 등 CCTV는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 범위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 사각 지대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한전 인입 전주, 통신 인입 전주가 단지 내에 설치되며,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고,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권 침해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측벽에 낙뢰 예방을 위한 측뢰 피뢰침이 시공 될 수도 있습니다. ■ TV 공청 안테나 및 위성 수신 안테나는 전파 수신이 양호한 동 지붕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고,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 내에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고,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 외벽 일부분에 우오수 배관이 노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각 실의 천장고는 실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및 공용시설 조명, 개별 상가 간판 등에 의해 일부 세대는 눈부심이 발생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관청의 인허가 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조건, 건축심의조건, 전문심의조건 등)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조경수와 부대복리시설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대지경계선형 등의 사항은 변경시공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냉방 관련시설(실외기 등)이 지상층 단지 외부로 노출되어 통행 및 세대간섭,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시공 과정 중 위치, 형태 및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 구조물(설비 환기용 급·배기구, 주차장 환기구)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및 쓰레기 분리수거장 위치에 따라 일부세대는 냄새, 해충 등에 의한 생활환경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방내진법규에 의거하여 위생/소방용 수조의 규격, 재료,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출입차단기는 경찰서, 안전총괄과와의 협의에 따라 위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1층 외곽 주변에는 우수 및 오배수 맨홀과 집수정이 설치되며, 우수 및 오배수 처리 계획 변경과 원활한 배수를 처리를 위해 맨홀 및 집수정은 위치변경, 추가 및 감소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식재, 조경시설, 포장은 단지 전체의 조화와 현장 여건, 인허가 내용에 따라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출입구, 지하 출입구, 건축 및 토목 옹벽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조경(녹지, 조경시설, 옥상녹화, 옥외시설물, 자전거보관소 등)에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선형 변경이나, 포장 및 조경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카다로그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의 변경은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동 직하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 등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 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설비가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수량 및 사양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혼용되어 설계된 단지로 보행자와 차량이 같은 공간에서 진출입이 발생하여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상의 형태 및 각 동 옥상, 지하주차장 등에 표현되는 줄눈과 지붕의 형태는 본 공사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조경 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공개공지와 필로티, D/A, 상가, 기타 부대시설, 조경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상가 주차장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비상차로는 외부 도로와 바로 연결되고 진출입부(보행자출입구)에 이동식 볼라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소방차 및 기타 서비스 차량의 이용시, 별도의 출입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탑장식물은 추후 설계변경이 진행될 수 있으며, 외부 월드메르디앙 브랜드 로고(BI)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V 및 기계식 주차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 할 수 있고, 공동주택 옥탑층 시설물(의장용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설치에 따른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으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의 경우 석재 마감 및 드라이비트 마감으로 인해 외부창호가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 및 지하주차장 바닥 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않을수 있습니다. ■ 일부 공동주택 지붕의 구조물은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됩니다. ■ 각 동 옥탑 및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 사업자 중계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부대시설의 경량천장틀 시공부위에 천장틀의 처짐 등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 되지 않을 경우 마이너찬넬보강은 제외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해당 천장고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지하주차장 차량통행 유효통과높이 : 2.3m, 차량주차부 유효높이: 2.1m)- PD, AV, EPS, TPS, S.T, AD, PIT 등의 내부벽체는 초벌미장 시공을 제외하며, 해당구간의 조적벽체 미장은 E/V 홀 또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시공합니다.- 창호는 공사여건에 따라 ±50mm범위 내에서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의 대지경계는 사업부지 전체의 고저차로 인하여 사업부지 외부와 단차가 발생합니다. ■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 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 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건축물 등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공동주택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선 외부의 도로 및 옹벽 등의 구조물은 실시계획단계로 관련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홍보관,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등)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지 주변의 인접건축물(기존 및 신축 건축물 등)에 의하여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 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혐오시설 유무, 도로,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주변 상가 등) 및 현장여건, 각종 공사로 인한 단지환경 등을 확인하신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또는 주변 개발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전기 배기 루버 설치로 비상 발전기 운전에 따른 소음, 냄새,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건물 외벽에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 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용시설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 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 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공개공지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가구, 비품,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커뮤니티센터 등의 부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분양 시 또는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쓰레기 야적장 및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동시설 공간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및 보일러 설치로 주변 인접 동에 소음 및 진동, 열기가 전달되어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비실 실외기는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위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휀룸 등 인접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 소화전의 배치 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동별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인허가권자와의 협의 등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면 만큼 주차대수가 감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동별현황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MMI등급 Ⅶ-0.224입니다. ■ 본 주택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12호)을 준수하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은 국가 공인 표준시험동에서 시험한 완충재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등급이므로, 추후 실제 세대의 성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동 조합으로 인한 요철과 입면의 장식 등으로 인하여 일조, 조망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거동 입면 계획상 설치된 장식물 등으로 인해 일부 세대는 음영 발생 등 일조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층 필로티 및 그 외 공간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설치되며, 시공 시 일부 규모, 형태, 위치,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쓰레기수거장의 설치로 인한 미관저해, 냄새 및 소음, 분진, 환경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사 중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등) ,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 모양 및 색, 색채디자인] 마감재 및 색채를 포함한 난간의 디테일 및 높이,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2동 1호라인 하부 지하1층에 발전기용 급배기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 기타 급배기용 DA 등 외부시설은 단지배치도를 참조 바랍니다. 사업승인 및 분양 후 DA 등의 기타 외부시설의 위치, 크기, 개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단지 내 인접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 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 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이 시설 주변에 설치되어 이로 인한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 지하1층 동출입구(엘리베이터홀 및 계단실)에서 지하1층 주차장으로의 출입이 기능실(전기실, 통신실) 및 창고의 배치로 인해 제한 됩니다.
	지하주차장	■ 단지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며, 충전을 위한 주차면도 전체 주차면 계획대수에 포함이 되고 각 주동 공용홀로부터 접근 및 이용(전기자동차 외 주차금지 등)의 형평성이 맞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구조 형식상 지하층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는 사용승인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점용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 및 채광창, 채광용 폴리카보네이트 등은 본 시공 시 디자인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 및 주차장 연결통로 등에 주변과의 온도차 등에 의해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환기설비 또는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될 예정입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경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및 도시형생활주택) 주차대수는 126대 이며, 오피스텔은 15대,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는 17대입니다. (자주식 주차 18대, 기계식 주차 140대 총 158대 - 장애인주차장포함) ■ 전기자동차 충전은 지하2층에 급속 충전 1대, 완속 충전1대 설치 예정입니다. ■ 주차공간 외 별도의 주차공간을 제공하지 않으며 세대별 지정주차공간에 대한 별도의 지정 및 표시는 없습니다. ■ 지하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휀룸 등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에서 주기적으로 환기를 적절히 행하고 예방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 됩니다. ■ 트렌치 시공시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렌치폭을 포함하며, 트렌치가 측면, 배면에 시공될 시에는 주차라인 마킹은 하지 않습니다.
	부대복리시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 등의 내부시설물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설치, 관리, 운영하여야 합니다.

	외관계획	■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발코니, 지붕 등에 장식용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등은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저층부 근린생활시설은 석재 등 기타 재료로 마감되고 아파트는 페인트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사 및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적용된 외관특화, 입면, 색채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로고(BI), 외장재 등이 설치 될 경우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 조명 인접세대는 빛반사로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공용부의 창호 사양, 위치, 크기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공통사항**	■ PD, EPS, TPS실 등 내측면에는 별도의 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여야 합니다. ■ 각종 분양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자재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홍보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및 세탁실 문턱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세대내부 욕실 및 발코니의 바닥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실제 시공시 도면 및 홍보관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여 고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며 아트월은 오픈줄눈으로 시공됩니다.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은 제외됩니다. ■ 세대 내부 칸막이벽의 재질이 경량벽체로 구성되어 있어 입주 후 중량물의 경량벽면 거치(부착)시 거치(부착)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 등의 중량물은 별도 보강을 하여야 합니다. ■ 욕실 벽 및 바닥, 현관바닥, 주방 벽, 발코니 바닥 등의 타일나누기는 홍보관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창호, 가구, 석재, 타일, 도배,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치수 등은 실시공시 홍보관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홍보관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자재특성상 본 시공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박이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상부장, 하부장, 아일랜드장 등), 욕실장, 욕조, 위생도기류 등]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 ■ 외부 창호의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 두께, 색상과 외장재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홍보관 내 등기구 조도량[lx]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된 것이며 본 공사 시 KS 조도 기준 동등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액세서리 및 콘센트)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홍보관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빨래 건조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상층부와 연결되는 내부 계단의 개수와 치수 및 폭은 본 시공시 상이할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 위치는 현장요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건축 성토 및 절토 구간이 동별로 상이 할 수 있어 동별 입면 부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사용되는 타일류는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으며, 타일나누기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오수 배관은 사업승인 도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내 및 공용부 타일 마감은 타일 물성의 고유한 특성에 의해 휨발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에 상부세대 배수배관이 시공되어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에 설치되는 수전의 위치, 개소 및 다용도실 단차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장생산 자재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 평형 욕실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됩니다.(욕조하부, 샤워부스 내에는 설치되지 않음) ■ 세대 내 거실 아트월 설치 및 복도 등에 벽지 외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 길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시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경, 비틀림 등이 발생합니다.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 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사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 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의 책임입니다. ■ 현관바닥, 주방 상판, 거실아트월 등에 사용된 타일 및 인조대리석 등은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홍보관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패턴·베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 101~102동 세대 내 피난사다리가 설치되며, 완강기가 설치(발코니1 및 테라스)되는 세대(4층)은 비상시 피난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시 소방 및 장애인 기준에 관련된 사항은 허가 완료시 보다 법적 의무 적용사항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에 맞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천연자재(석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홍보관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베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천연석으로 시공 되어 있는 경우 본 시공시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자연적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특기시방서에 별도의 시공기준이 없는 경우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시공계획서 또는 승인자재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릅니다.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인증표시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공인기관 승인된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밥굽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성능시험을 통하여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품질 또는 성능을 확인 후 현장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의 경우, 입주 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성능저하에 대해서는 수분양자(입주자)가 유지 및 보수 관리하여야 합니다. ■ 홍보관 건립안과 설계도서가 상이한 점이 발생되는 경우 홍보관대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세대 및 기타 설계변경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등 관련법령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설계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단, 홍보관에 설치된 위치와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실제 시공 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욕실 거울의 자재특성(은 성분)상 산성, 알카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의 책임입니다. ■ 수분양자가 임의로 전유세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여 하자 또는 성능불량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각종 도어 및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손잡이,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열림 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에 전기인덕션,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홍보관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공품목	■ 거실 및 방은 천정형 에어컨이 기본품목으로 제공됩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제공되는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목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의 우려가 있습니다.
	가구공사	■ 세대내부가구(붙박이장, 주방가구) 및 거울 설치부위의 비노출면(천장,벽체,바닥)에는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으며, 주방가구 및 붙박이장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사유와 관련하여 설치완료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 각종 홍보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 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욕실(화장실) 출입문은 본 공사 시 PVC계통(ABS)도어로 시공됩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수전류 및 각 화장실의 마감자재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도기류는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조대리석 주방상판은 제품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으며,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상·하부장의 깊이는 본 공사시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시트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악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창호, 시트판넬 등의 고정을 위해 본공사 시 타카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욕실장 및 샤워부스의 디자인 및 디테일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건조기 사용 시 온도 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방지를 위하여 환기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시스템 선반은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욕실거울 배면은 타일마감이 없습니다. ■ 타입별 제공되는 주방가구, 냉장고장, 붙박이장, 드레스룸 선반 등은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난방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며, 바닥 마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창호공사	■ 외부 창호는 현장여건에 따라 형태 및 재질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일러실 연도배관으로 보일러실 창호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석재마감 세대의 경우 외부창호 및 발코니난간대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오피스텔 창호는 배연창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사용자에 따라 불편함을 느낄수도 있습니다. ■ 세대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 방향은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2층 이상 세대 중「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와 제18조의2에 해당되는 세대의 외부창호에는 창문의 한가운데에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는 빛반사등의 지름20cm이상의 역삼각형 붉은색 표시(스티커 등)가 부착되며, 해당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는 지름3cm이상의 타격지점이 원형으로 표시되며, 미관상의 이유로 제거가 불가합니다. ■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에 따라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하도록 되어 있는바 소방관 진입창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면 지상에 차량 주정차 및 물품 적재가 불가합니다. ■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홍보관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별 창호는 본 시공시 창호의 사양 및 프레임 사이즈, 색상, 개폐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장식물 부착, 정원 및 테라스에 면한 방수턱 확대 시공 등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	■ 복도 및 세대 전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신발장, 창고장 또는 침실붙박이장의 하부 또는 배면, 침실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등은 전기설비기술 기준의 판단기준 (2018 개정)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설치 예정입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 예정이니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조명기구는 실시공시 홍보관과 위치 및 색온도등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전기, 설비공사상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됩니다. ■ 세대보일러는 적정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점검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화장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환기 디퓨져,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 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화장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욕실(화장실) 출입 시 문짝에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홍보관 소화 시설물 이며, 본 시공시 단위세대에는 설계도면 상 변경 시공 될수 있습니다. ■ 욕실(화장실), 드레스룸의 난방제어를 위한 별도의 온도조절기가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른 거실용 또는 침실용 온도조절기에 의해 통합 제어됩니다. ■ 세대 내 우수입상관, 배수입상관, 선홈통, 드레인 등이 실제 시공 시 설치되며 이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의 렌지는 전기인덕션이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도시가스에 의한 가스렌지 아님) ■ 세대환기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는 개별난방으로 계획되며, 단지 내 각종 인입(상·하·오수·도시가스·한전 등) 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은 침실2, 침실3 또는 현관에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되며,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렌지후드 상부장 내에 자동식소화기 설치에 따른 일부 공간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기, 에어컨 등의 가동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지하주차장에 배치되어 있으며, 동별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소방내진법규에 의거하여 위생/소방용 수조의 규격, 재료,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상부에 전열교환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천장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으며, 작동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 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이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화장실 천장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됨에 따라 기타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됩니다. ■ 엘리베이터홀은 각 세대간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서 입주자의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홀은 채광창 창호의 유무 및 창호크기,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 및 실외기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세대 내부에 기본적으로 하향식 피난구가 공통 설치되나, 최하층 세대는 설치 제외됩니다. ■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 또는 세탁실 상부 천정에 설치되며, 전열교환기 및 연결 덕트가 천정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냉매배관 및 응축수배관이 노출 시공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피난사다리가 있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다용도실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환기유니트에 의해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면 구성상 전동빨래건조대는 설치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발코니 벽체두께는 동일 타입에서 층수 및 세대 위치에 따라 벽체두께가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크기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되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하향식 피난사다리 및 출입문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결로에 의한 하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 세대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피난공간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선택품목	■유무상옵션 선택결과에 따라, 홍보관에 전시되지 않은(혹은 샘플로 전시된) 마감재로 해당 세대가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홍보관과의 마감재 차이로 인해 실제 입주시 느끼는 분위기, 마감색상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옵션선택품목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발생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과 아파트간 대지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분양 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용 저수조, 실외기, 연도 및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 동에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주택(아파트)과 근린생활시설 입주자(입점자)가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등)이 단지 내・외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세대/점포에서 조망될 수 있습니다.
기 타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분양상담 관련	• 분양상담 및 계약 과정에서 분양 직원의 아래와 같은 행위는 시공사의 지침과 위배된 사항으로 시공사와 무관함. 1. 프리미엄 보장, 추가 할인, 계약해제, 연체료 감면 및 이와 유사한 보장행위 2. 계약 후 환매를 보장하는 행위 3. 분양대금을 제외한 일체의 금전거래행위 4.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별도의 개별 약정행위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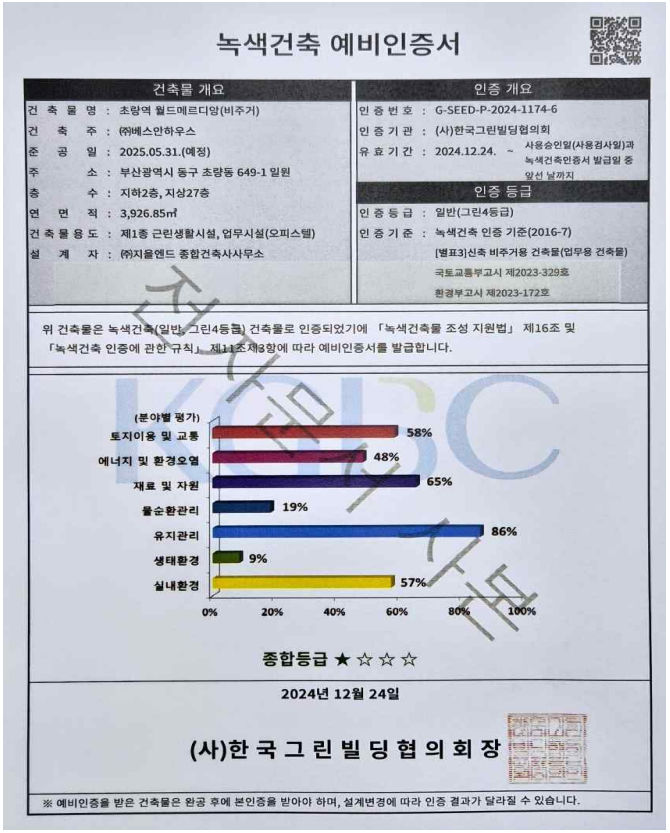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 축 물 명	초량역 월드메르디앙(비주거)	인 증 번 호	G-SEED-P-2024-1174-6
건 축 주	(주)베스안하우스	인 증 기 관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준 공 일	2025.05.31.(예정)	유 효 기 간	2024.12.24. ~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 날까지
주 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649-1 일원	인증 등급	
층 수	지하2층, 지상27층	인 증 등 급	일반(그린4등급)
연 면 적	3,926.85㎡	인 증 기 준	녹색건축 인증 기준(2016-7) [별표3]신축 비주거용 건축물(업무용 건축물)
건 축 물 용 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29호
설 계 자	(주)지율앤드 종합건축사사무소		환경부고시 제2023-172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일반, 그린4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종합등급 ★ ☆ ☆ ☆

2024년 12월 24일

(사)한 국 그 린 빌 딩 협 의 회 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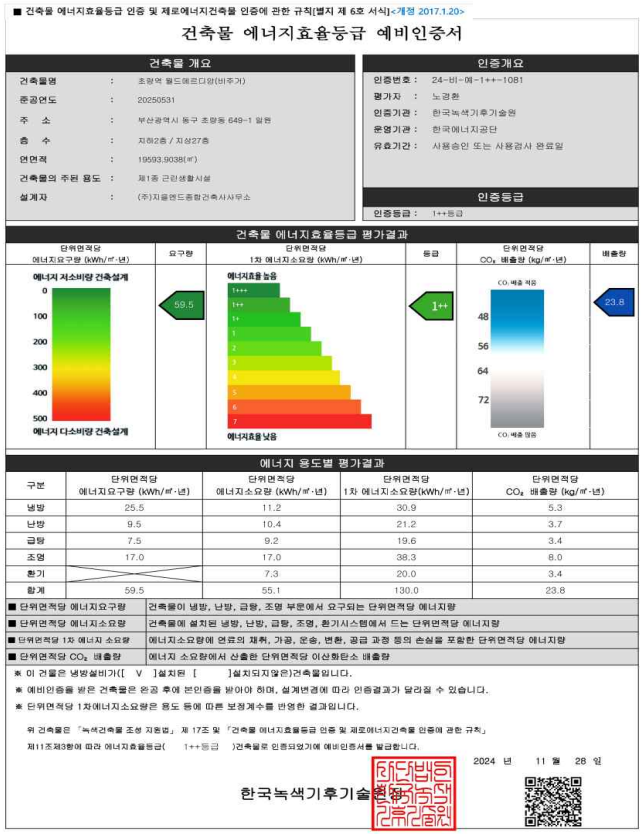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개요	
건축물명	초량역 월드메르디앙(비주거)	인증번호	24-비-에-1++-1081
준공연도	20250531	평가자	노경환
주 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649-1 일원	인증기관	한국녹색기후기술원
층 수	지하2층 / 지상27층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연면적	19593.9038(㎡)	유효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인증등급	
설계자	(주)지율앤드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냉방	25.5	11.2	30.9	5.3
난방	9.5	10.4	21.2	3.7
급탕	7.5	9.2	19.6	3.4
조명	17.0	17.0	38.3	8.0
환기		7.3	20.0	3.4
합계	59.5	55.1	130.0	23.8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에너지 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V]설치된 [ ]설치되지않은)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 년 11 월 28 일

한국녹색기후기술원장

■ 내진설계 등급 : (건축법 제48조 및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참조)

최대지반가속도	내진능력(MMI 등급)
0.20	Ⅶ-0.224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 2)

구분		유효높이	출입구높이
주차장	지하1층	2.3m	2.3m
	지하2층	2.3m	2.3m

■ 기타 사항

• '월드건설산업'은 월드메르디앙 브랜드 제공과 함께 인테리어 및 디자인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며, 본 사업의 시공사는 책임준공의 의무와 함께 공급 주택 및 복리시설의 하자보수와 사후관리를 책임진다.

• '월드건설산업'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신탁회사, 대출금융기관 및 수분양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신탁사업의 특수성 및 신탁사의 책임과 의무의 범위

계약자(수분양자)는 다음 각 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분명히 인지하고 동의하였음을 확인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본 사업은 위탁자인 ㈜베스안하우스가 매도인 겸 수탁자인 ㈜코람코자산신탁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베스안하우스이고, 매도인 겸 수탁자인 ㈜코람코자산신탁은 매도인으로서의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코람코자산신탁이 매도인으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코람코자산신탁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신탁재산 한도를 초과할 경우 위탁자 ㈜베스안하우스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기된 분양대금, 발코니확장공사비, 유상옵션 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분양대금은 납부 효력이 없다.
-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손해배상 및 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은 위탁자 ㈜베스안하우스와 시공사 마조아종합건설㈜가 부담하며, 매수인은 ㈜코람코자산신탁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은 위탁자 ㈜베스안하우스와 매도인 겸 수탁자 ㈜코람코자산신탁 사이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코람코자산신탁이 공급하는 것이며, 신탁해지 또는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즉시 모든 공급계약에 대하여, 개별 공급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공급계약 대상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그 즉시 해당 공급계약에 대하여, 공급자이자 매도인으로서 수탁자 ㈜코람코자산신탁이 가지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등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기타 손해배상의무를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아니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베스안하우스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승계)된다.
- 매수인이 납부한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등 PF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감리회사 및 감리 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	통신 • 소방감리
회 사 명	㈜지을엔드종합건축사사무소	㈜골드이엔지	㈜골드이엔지
금 액	₩847,000,000	₩11,000,000	₩33,000,000

■ **사업관계자**

구분	매도인 겸 시행수탁사	시행위탁사	시공사
상호	㈜코람코자산신탁	㈜베스안하우스	마조아종합건설㈜
주소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골든타워	부산 동구 홍곡로 64번길 3, 7층	부산 동구 홍곡로 64번길 3, 7층
법인등록번호	110111-2359837	180111-0960286	18011-1004819

■ **홈페이지 :** www.북항월드메르디앙.com
■ **홍보관 위치 : 부산광역시 동구 홍곡로 22, 1층**
■ **분양문의 : 051-468-2502**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홍보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